

장기	0	식	관리	규정

관리번호	W-7.6	제정일	2013년 02월 15일
승인책임자	병원장	최근개정일	2016년 10월 31일
검토책임자	규정관리위원회위원장	시행일	2016년 12월 01일
주무부서	원무과,진료부	검토주기	3년
관련근거	의료기관인증기준7.6	검토예정일	2019년 10월 30일

## 1. 목적

장기 및 기타 조직의 기증에 관한 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기증 과정, 해당지역의 장기기증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.

## Ⅱ. 정의

- 1. 장기 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장기 이식이란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
## Ⅲ. 정책
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제 12조(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), 13조(장기이식 등록기관), 제 16조(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)에 근거한 등록기관, 장기이식의료기관,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을 연계한다.

## Ⅳ. 절차

- 1. 장기기증 및 이식과정에 대한 규정
  - 1) 윤리위원회 간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제22조(장기 등의 적출요건)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기 등의 이식과 기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결정을 지원하고 장기/조직의 적출 및 기증·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2) 대상 : 인체 장기 등
  - 3) 정보제공 : 필요시 관련안내문을 환자와 보호자 및 직원들에게 제공한다.
    - (1) 잠재뇌사자 발생 시 신고 절차
      - ① 내부 신고절차 : 잠재뇌사자 발생시 윤리위원회 간사(원무과장, 원내 1010)에게 연락하도록 직원에게 교육한다.
      - ② 외부 신고절차: 병원장은 잠재뇌사자 발생 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알리거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(KONOS)에 신고하여,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시행, 장기기증을 위한 상 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        - 가. 재)한국장기 기증원: 02-3447-5632
        - 나.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24시 뇌사관리 : 02-2628-3641



입안자	규정관리위원장	
승인책임자	병원장	
서명일		